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40
----------	-------

발의연월일 : 2022. 10. 18.

발 의 자 : 강기윤 · 이채익 · 박성중
윤상현 · 서범수 · 윤영석
박대출 · 임병헌 · 김선교
김용판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는 있으나, 정작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

우리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국

정과제에 담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 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추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담배첨가물”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4. “담배배출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담배에 불을 붙여 태워 발생하는 연기
 - 나. 담배 또는 니코틴 용액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
 - 다. 가목과 나목 이외에 씹는 담배의 배출물 등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그 밖의 물질
5.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6. “유해성분”이란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 있는 물질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열거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말한다.

7. “담배성분”이란 담배첨가물 성분과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말한다.

8. “담배 유해성 관리”란 담배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의 분석 및 공개, 제조자등의 자료제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조사·연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담배성분 정보의 공개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3.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들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제11조(담배성분의 정기검사) ① 제조자들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배출물의 유해성분은 다음 각 호의 성분으로 한다.

1. 니코틴
2. 포름알데히드
3.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유해성분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들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들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담배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검사의뢰 절차와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사결과서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결과서 내용 중 제9조제1항제5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검사결과서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사결과서의 송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송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담배성분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를 검토하여 품목별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정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해당 담배를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담배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수·폐기의 절차 및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9조(수수료)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